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www.nfqs.go.kr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음식점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가리비 · 우렁쉥이 ·
전복 · 방어 · 부세**가
추가되었습니다.



가리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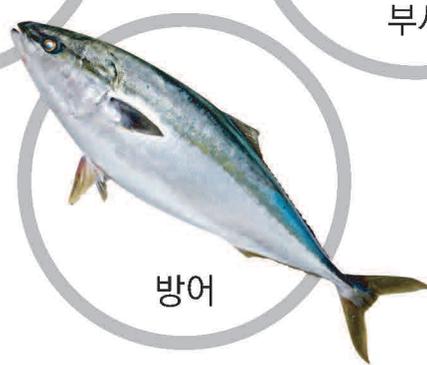
전복



부세



우렁쉥이
(멍게)



방어

2023년 7월 1일부터 확대 시행



현재 시행 중인 15가지 수산물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고등어, 갈치, 참조기, 오징어,
꽃게, 멍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다랑어, 아귀, 주꾸미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 및 방법

생산·유통·판매자

표시 대상	국산 수산물	원양산 수산물	수입 수산물	수산물 가공품
표시 방법	국산, 국내산, 연근해산	원양산 또는 원양산 (해역명)	국가명 (통관 시 원산지)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

※ 식염도 수산물에 단순가염,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경우 원산지 표시대상

음식점

표시 대상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고등어, 갈치,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참조기, 오징어, 꽃게,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부세(해당 수산물 가공품을 포함)	조리하여 판매·제공하기 위하여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
표시 방법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 또는 일괄 원산지표시판으로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산지표시판(29cm×42cm 이상, 글자 60 포인트) 게시판 옆 또는 아래, 게시판 없을 시 업소 출입구 정면에 부착 수산물가공품 사용자 가공품에 표시된 원산지를 표시 (단, 원재료가 복합원재료인 경우 표시 생략) 	동일 어종의 경우 원산지별로 섞이지 않도록 구획하여 풋말 또는 안내표시판 (글자 3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원산지가 같은 경우 일괄표시 가능)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자 처벌

미표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 생산·유통·판매자 :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음식점 : 품목별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 과태료 부과

표시방법 위반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행위

- 미표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1/2 금액 부과

거짓표시 원산지를 거짓, 혼동 또는 위장표시 행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병과가능)
- 과징금 : 2년간 2회 이상 적발 시 위반 판매금액의 5배(최고 3억원)까지
- 형량하한제 : 5년 이내 다시 거짓표시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수산물 원산지 신고 및 문의 1899-2112 |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원
카카오톡 신고는 카카오톡에서 **수산물원산지표시** 채널 추가



김치류와 절임류 속 소금 원산지를 꼭! 확인하세요



김치류 · 절임류 원산지 표시 이렇게 합시다

김치류

①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품목 →

고춧가루, **소금** + 추가 2순위

② 고춧가루를 사용하지 않는 품목 →

소금 + 추가 2순위

절임류

소금 + 추가 2순위

(단,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하나가 98%이상인 경우 그 원료와 소금의 원산지만 표시)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는 이렇게 합시다

배합비율에 따른 원산지표시대상

- 1 한 가지 원료 배합비율 합이 98%이상 → 1순위의 원료 원산지
- 2 두 가지 원료 배합비율 합이 98%이상 → 2순위까지의 원료 원산지
- 3 그 외의 경우 → 3순위까지의 원료 원산지

* 물, 식품첨가물, 당류, 주정은 배합비율 순위 및 표시 대상에서 제외

원료 농수산물 명칭을 제품명(제품명의 일부)으로 사용한 경우

→ 배합비율 순위내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원산지를 추가하여 표시

농수산물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

외국산(○○국, ○○국, ○○국 등) 표시 가능

- 1 원료의 원산지가 최근 3년 이내 연평균 3개국 이상 변경된 경우
- 2 신제품의 경우 원산지 국가가 최초 생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3개국 이상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원산지 위반자 처벌

미표시 :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 **생산·유통·판매자**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음식점** 품목별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 과태료 부과

표시방법위반 :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행위

- 미표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1/2 금액 부과

거짓표시 : 원산지를 거짓, 혼동 또는 위장표시 행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병과가능)
- **과징금** 2년 이내 2회 이상 적발 시 위반 판매금액의 5배(최고 3억원)까지
- **형량하한제** 5년 이내 다시 거짓표시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위반자 원산지 표시 교육 및 공표 :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 2회 이상 처분 받은 자

- **교육** 교육이수명령을 받은 자(처분을 받은자)는 최대 3개월 이내 교육을 이수
 - * 1차 미이수 30만원, 2차 미이수 60만원, 3차 미이수 100만원
- **공표**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도, 시·군, 한국소비자원, 인터넷정보 제공 사업자 홈페이지 등에 공표(영업소 명칭, 주소, 위반내용 등)